

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[] 승인 [] 연장승인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	1개월(2주)		
신청인	①선임인 []해당 - 신고번호() []비해당					
	사업장명	대표자	②업종			
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근로자 수				
	소재지 (전자우편주소:)					
	전화번호	팩스번호				
③구분	[] 제조 [] 수입		[] 연구개발용 [] 비연구개발용			
④제품명						
⑤제품 내 구성성분의 명칭·함 유량 및 신청 여부 등	물질안전 보건자료 대상물질 해당 여부	명칭(CAS No.)	신청 여부	함유량	신청 여부	건강·환경유해 성 및 물리적 위 험성 정보
	[]해당 []비해당 - []해당없음 []자료없음	1.	[]신청 []비신청		[]신청 []비신청	
	[]해당 []비해당 - []해당없음 []자료없음	2.	[]신청 []비신청		[]신청 []비신청	
	[]해당 []비해당 - []해당없음 []자료없음	3.	[]신청 []비신청		[]신청 []비신청	
	[]해당 []비해당 - []해당없음 []자료없음	4.	[]신청 []비신청		[]신청 []비신청	
- 제품 내 구성성분의 수: 종 -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수: 종 - 신청하는 구성성분의 수: 종						
⑥대체자 료	대체명칭					대체함유량
	1.					
	2.					
	3.					
※ 비공개를 신청하는 명칭 및 함유량에 대하여만 작성						
⑦제품의 건 강·환경 유해성 및 물리적 위 험성 정보						
⑧기승인 정보	※ 최초로 승인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승인번호 및 승인기간 기재(연장승인 신청서인 경우만 기재)					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[] 승인
[]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

제출 서류	1.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(연구개발용인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) 2.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3.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, 물리적 위험성 정보. 다만, 해당 정보가 제2호의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출처와 함께 적혀있거나, 구성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출처와 함께 적혀있는 경우 그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. 4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나 서류. 다만, 해당 정보가 제2호의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혀 있는 경우 제2호의 자료로 대신할 수 있으며,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물질 확인서류와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. 5.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	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사업자등록증명(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①란은 신청인이 법 제113조에 따른 선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표시합니다.
- ②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.
- ③란은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 중 하나를, 연구개발용 및 비연구개발용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.
- ④란은 화학제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.
- ⑤란은 제품 내 구성성분에 대한 명칭(CAS No. 포함) 및 함유량 정보를 기재합니다.
 - 구성성분별로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지 여부를 표시한 후 이에 해당하는 구성성분 중 비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명칭 및 함유량을 표시합니다.(명칭과 함유량 모두를 신청하거나 또는 그 중 어느 하나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)
 -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구성성분별로 건강·환경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정보를 기재합니다.
 - 제품 내 구성성분 및 비공개를 신청하는 구성성분의 수 등을 기재합니다.(하나의 구성성분에 대해 명칭과 함유량 모두를 신청하거나 또는 그 중 어느 하나만을 신청하여도 1건으로 기재)
- ⑥란은 ⑤란에서 비공개를 신청한 구성성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재방법을 참고하여 승인받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합니다.
- ⑦란은 화학제품에 대한 건강·환경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정보를 기재합니다.
- ⑧란은 연장승인 신청서에 한하여 최초로 승인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승인번호 및 승인기간을 기재합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➔	접수	➔	비공개 승인 심사	➔	결재	➔	통지
신청인	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